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66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6.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정윤주)

가. 제안이유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와 이익의 비교형량 등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갈등영향분석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제척,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동 등을 규정(안 제7조 ~ 제11조)

- 5) 비밀유지,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평가 등을 규정
(안 제12조 ~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조례제정안은 성북구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67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8.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경수현)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만을 규정하여 서면 회의 심사에 대한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고, 서면 심의 등을 포함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에 서면 심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자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위원회 운영 실적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 조문의 자구 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제2항, 제3항)
- 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3항,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실한 활동을 도모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위원회 수당 지급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일부를 수정함.

나. 수정 내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을 “위원에게” 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7
----------	--------

제안 연월일: 2023년 9월 8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회

1. 수정이유

위원회 수당 지급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일부를 수정함.

2. 주요내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을
“위원에게” 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수당) ① 위 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u>수당</u>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수당) ① 위 원회의 <u>회의에 참</u> <u>석한 위원에게</u>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18조(수당) ① --- --- <u>위원에게</u>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68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8.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강수진)

가. 제안이유

일상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신체,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2) 지원 및 범위,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3)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지도·감독 및 환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체육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 및 위임 사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조례안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바로잡고자 수정함.

나. 수정 내용

- 제2조제3호 중 “ “공공체육시설” 이란” 을
“ “체육시설” 이란” 으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로 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8
----------	--------

제안 연월일: 2023년 9월 8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안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바로잡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3호 중 ““공공체육시설”이란”을 ““체육시설”이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체육시설” 이란” 을 ““체육시설” 이란” 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
호” 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서울
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u>공공체육시설</u> ”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 <u>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제2조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체육시설</u> ”이란 ----- ----- ----- 「 <u>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u> 」 제2조제1호-----.
제4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사항은 「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u> 」 및 「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69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소형준)

가.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요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도서관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100분의 50 감면 가능(안 제9조제2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의 감면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70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소형준)

가.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요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100분의 50 감면 가능(안 제19조제1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의 감면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71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소형준)

가.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100분의 50 감면 가능(안 제19조제1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의 감면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56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성북구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3)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3조)
- 4)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안 제4조)
-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5조)
- 6)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6조)
- 7)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¹⁾ 제4조의3 개정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58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함(안 제5조제2항)
- 2)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추가 (안 제12조제2항)
- 3)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 추가(안 제13조)
- 4)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변경(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구청장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비상벨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59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현)위탁법인	시설규모	위탁기간
성북구 마을·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일:2014. 11.)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종암동)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 대지면적:943㎡ · 연면적:2,096㎡ · 규모: 지하1층 ~ 지상6층	[1기] 2015.04.01.-2017.12.31
				[2기] 2018.01.01.-2020.12.31
				[3기] 2021.01.01.-2023.12.31

2)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6. 12. 31 [3년]

구분	1~3기 민간위탁 (2015년~2023년)	4기 민간위탁 (2024년~2026년)
센터명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사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민간위탁 계약 종료(2023.12.31)에 따른 위탁사무
조정 및 센터명 변경 필요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4) 위탁사무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지원(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홍보, 시장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조례’ 및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61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일자: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9. 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3. 12. ~ 2024. 2.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 운영기간 : 2023. 12. 22.(금) ~ 2024. 2. 4.(일)
- 위탁내용
 - 눈썰매장, 가족눈놀이장, 아이스링크, 빙어잡기체험장, 체험학습장, 어린이 놀이기구,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 폐장 후 철거

-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 인력 운용 등
-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비용 : 680,000천원

○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실외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을 설치 및 운영한 수탁 또는 용역 실적(단일 건 기준 2억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

○ 위탁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2)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 유도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동의안은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4조 및 제5항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